

부속서 III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뉴질랜드

목록 가

주해

1. 이 목록은 제10장(투자)만을 따라 이루어진다.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대상인 서비스 투자와 관련한 이 목록의 어떠한 측면도 투명성의 목적으로만 이 목록에 보유된다.
2.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뉴질랜드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3. 뉴질랜드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의무의 유형**은 제2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의 수준을 적시한다.
 - 라. **조치근거**는 유보된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근거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조치내용**은 유보항목이 적용되는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4.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내용** 요소에 적시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는 해석의 목적상,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분야	:	모든 분야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조치내용	:	<p><u>투자</u></p> <p>1. 「1993년 회사법」과 「2013년 재무보고법」에 따라 수립된 뉴질랜드의 재무보고 제도와 합치되게, 다음 유형의 실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준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표를 감사 받은 후 기업등록소에 등록하도록 요구된다(그러한 요건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a)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되고 「1993년 회사법」의 정의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대규모”¹인 모든 법인(“해외 회사”)</p> <p>b) 회사 총회에서 모두 합쳐서 의결권의 25퍼센트 이상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행사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지분이 다음에 의하여 보유되는 모든 “대규모” 뉴질랜드 회사².</p> <p>(i)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법인의 자회사 (ii)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iii) 뉴질랜드에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인</p> <p>c) 해외 회사의 자회사로서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모든 “대규모” 회사³.</p> <p>2. 재무제표 작성이 요구되는 회사에 1곳 이상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들은 자신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준수하는 그 그룹에 관한 기업집단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p>

¹ 회계기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이 하나 이상 적용되는 해외 회사 또는 해외 회사의 자회사는 “대규모”이다.

(i) 2개의 직전 회계기간의 각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실체와 그 실체의 자회사(존재하는 경우)의 총 자산이 2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2개의 직전 회계기간에서 각 회계기간 동안 실체와 그 실체의 자회사(존재하는 경우)의 총 수입이 1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회사의 뉴질랜드 사업이 “대규모”가 아니며 그 회사가 설립된 곳의 법이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보고서가 요구된다.

² 회계기간에 관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뉴질랜드 회사는 “대규모”이다.

(i) 2개의 직전 회계기간의 각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실체와 그 실체의 자회사(존재하는 경우)의 총 자산이 6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2개의 직전 회계기간에서 각 회계기간 동안 실체와 그 실체의 자회사(존재하는 경우)의 총 수입이 3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p>a) (B) 법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며 (A) 회사 자체가 (B) 법인의 자회사인 경우.</p> <p>(i)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경우, 또는</p> <p>(ii) 「1993년 회사법」 제18부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리고</p> <p>b) B와 A 그리고 B의 다른 모든 자회사로 구성된 그룹에 관한 기업집단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준수하여 완성된 경우. 그리고</p> <p>c) 제(b)항에 언급된 기업집단 재무제표 사본과 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사본이 「1993년 회사법」에 따른 등록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신청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p> <p>3. 해외 회사가,</p> <p>a) 「1993년 회사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며 그 회사의 뉴질랜드 사업이 “대규모” 해외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산 및 수입 기준가를 충족하는 경우, 대규모 해외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그 회사의 뉴질랜드 사업이 뉴질랜드에서 형성·등록된 회사에 의하여 수행된 것처럼 뉴질랜드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p> <p>b) 「1993년 회사법」에 따라 기업집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요구되며 그룹의 뉴질랜드 사업이 “대규모” 해외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자산 및 수입 기준가를 충족하는 경우, 작성된 기업집단 재무제표는 그룹의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그룹의 일원이 뉴질랜드에서 형성·등록된 회사인 것처럼 그룹의 뉴질랜드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한다.</p>
조치근거	: - 1993년 회사법 - 2013년 재무보고법

³ 회계기간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이 하나 이상 적용되는 해외 회사 또는 해외 회사의 자회사는 “대규모”로 간주된다.

(i) 2개의 직전 회계기간의 각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실체와 그 실체의 자회사(존재하는 경우)의 총 자산이 2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ii) 2개의 직전 회계기간에서 각 회계기간 동안 실체와 그 실체의 자회사(존재하는 경우)의 총 수입이 1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회사의 뉴질랜드 사업이 “대규모”이지 않고 그 회사가 설립된 곳이 법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보고서가 요구된다

분야	: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업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p><u>투자</u></p> <p>「2001년 낙농업 구조조정법(DIRA)」 및 규정은 가축 검사 데이터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를 규정한다.</p> <p>낙농업 구조조정법(DIRA)은,</p> <p>(a) 뉴질랜드 정부가 다른 낙농업 실체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정부는,</p> <p>(i) 실체의 국적과 거주지, 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인, 그리고 실체의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p> <p>(ii) 국적 기준을 포함하여 실체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인을 제한할 수 있다.</p> <p>(b) 젓소 검사에 관여하는 실체가 데이터를 가축개량회사(LIC) 또는 승계실체에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p> <p>(c)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관한 규칙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목적이 “뉴질랜드 낙농업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접근이 거부될 수 있고 접근하고자 하는 인의 국적이나 거주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칙을 수립한다.</p>
조치근거	:	2001년 낙농업 구조조정법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u>투자</u>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은 어떠한 단일 해외 실체가 49.9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뉴질랜드 정부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이사의 최소 절반은 뉴질랜드 시민일 것이 요구된다.
조치근거	:	코러스 유한회사 정관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서비스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조치내용	:	<u>투자</u> 「1989년 무선통신법」상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를 위한 대리인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위한 면허나 관리권의 취득, 또는 그러한 면허나 관리권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는 기업혁신고용부의 최고 행정관의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조치근거	:	1989년 무선통신법

분야	: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는 농업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p><u>투자</u></p> <p>「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상 뉴질랜드 정부는 양봉, 과수 재배, 홉 재배, 사슴 사육 또는 수렵용 사슴으로부터 얻은 생산물, 또는 염소의 생산물, 즉 염소의 털이나 섬유인 “일차생산물”에 대하여 독점판매 및 취득권한(또는 그 이하의 권한)을 보유한 법정 판매당국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과할 수 있다.</p> <p>「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에 따라 판매당국의 광범위한 기능, 권한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이 발표될 수 있다. 특히, 규정은 이사 또는 직원이 뉴질랜드 국민 또는 거주자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조치근거	:	1953년 일차생산물 판매법

분야	:	항공 운송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p><u>투자</u></p> <p>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의 국제 항공사로서 정기 국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항공운송기업만이 뉴질랜드에서 외국 국제 항공사로서 연안 운송을 포함하는 국제 정기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부 장관 또는 교통부 차관 중 어느 한쪽이 국제 항공 서비스 면허의 발급을 결정한다. 비정기 항공 서비스는 적절한 면허 또는 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지침에 따른 교통부 차관의 승인 중 어느 하나가 요구된다. 그러한 결정은 뉴질랜드의 양자 및 다자 간 항공 서비스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면허는 항공사가 뉴질랜드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거나, 뉴질랜드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요건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민간항공법 - 장관 지침

분야	:	항공 운송
정부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조치내용	:	<p><u>투자</u></p> <p>키위 주주(뉴질랜드 정부)의 허가가 없는 한, 단일 외국 국민은 에어뉴질랜드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p> <p>이에 더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 또는 항공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인도 키위 주주(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에어뉴질랜드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가질 수 없다. (b) 에어뉴질랜드 본점과 주 사업장은 뉴질랜드에 위치한다. (c) 이사회에서 최소 3인은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d) 이사회 의 과반수 이상은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e) 이사회 의장은 뉴질랜드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f) 에어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설립 및 등록이 유지된다.
조치근거	:	에어뉴질랜드의 정관

목록 나

주해

1. 이 목록은 제10장(투자)만을 따라 이루어진다.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대상인 서비스 투자와 관련한 이 목록의 어떠한 측면도 투명성의 목적으로만 이 목록에 보유된다.
2. 이 목록은,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3. 뉴질랜드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 나. **의무의 유형**은 제2항에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다. **유보내용**은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비합치 조치의 성격 또는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 라.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 목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규정된 조치는 포괄적이지 않다.

4.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유보항목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가 우선한다.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법의 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의 다음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 보건 ○ 소득 보장 및 보험 ○ 공교육 ○ 공공주택 ○ 공공훈련 ○ 대중교통 ○ 공익사업 ○ 사회 보장 및 보험, 그리고 ○ 사회복지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식수의 배분, 수집, 처리 및 유통을 포함하여, 물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병에 담긴 광수, 탄산수 및 자연수의 도매 및 소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이 협정 발효일에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이양 행위의 일부로서만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정부가 전부 또는 과반을 소유하는 기업이 유일한 서비스 공급자가 되거나 한정된 수의 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 고위경영진 및 이사의 구성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을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실효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국민 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인에 게 그 기업의 지분 또는 그 기업의 자산을 판매하는 것에 관 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자신의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다음의 투자 행위에 대하여 뉴질랜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a) 뉴질랜드 실체에 대한 25퍼센트 이상의 어떠한 유형의 지분⁵ 또는 의결권⁶의 취득 또는 지배로서, 이전 대가 또는 자산가치가 1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p> <p>b) 뉴질랜드에서 사업 운영의 개시 또는 사업 자산을 포함한 기존 사업의 인수로서, 그 사업 또는 자산의 설립 또는 인수에 수반되는 총 비용이 1천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p> <p>c) 달러가치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민감하다고 간주되거나 특정한 승인이 요구되는 특정 범주의 토지의 취득 또는 지배. 그리고</p> <p>d) 달러가치에 관계없이, 상업적 어획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을 보유하는 뉴질랜드 실체에 대한 25퍼센트 이상의 어떠한 유형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취득, 또는 상업적 어획할당량 또는 연간 어획권의 취득.</p> <p>뉴질랜드는 뉴질랜드의 해외투자 제도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거래 범주에 적용되는 승인 기준을 규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기존의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해외투자법 - 1996년 수산업법 - 2005년 해외투자규정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분”이라는 용어는 지분 및 그 밖의 유형의 증권을 포함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결권”은 뉴질랜드 실체 이사회 구성의 25 퍼센트 이상에 대한 지배권을 포함한다.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10.4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자유화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이는 경제통합 또는 무역 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그러한 협정 당사자들 간에 취하여진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p> <p>뉴질랜드는 발효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국제 협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 수산업, 그리고 • 해상 사안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다음의 통제,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자원, 토지 또는 수원의 지분을 포함하여 유적지 관리 목적(역사적 및 자연 유적지 모두), 공중오락 그리고 경관 보전을 위하여 조성된, 보호 구역. 또는 •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거나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물종.
기존의 조치	:	<p>1987년 보존법 및 다음에 열거된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년 보존법의 제1양허표 • 1991년 자원관리법, 그리고 • 1974년 지방정부법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다음에 관련된 어떠한 국적 또는 거주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복지, 그리고 •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수출 식품의 식품안전성 ○ 동물사료 ○ 식품기준 ○ 차단방역 ○ 생물 다양성, 또는 ○ 식물 또는 동물 상품의 건강 상태의 증명 <p>이 유보항목의 어떠한 내용도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의무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p>이 유보항목의 어떠한 내용도 제6장(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의무 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해안 및 해저, 국제법에 정의된 내수(그러한 내수의 하상, 하층토 및 경계를 포함한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의 해상 양여 발급을 포함하여 대륙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이에 따라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자원관리법 - 2011년 해양 및 연안지역(타쿠타이 모아나)법 - 1964년 대륙붕법 - 1991년 국유 천연자원법 - 2012년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환경영향)법

분야	:	사업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무의 유형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공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사업 서비스 연구개발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국립연구소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 서비스로서 그러한 연구가 공공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그리고 • 물리과학, 화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및 기술, 농업과학, 의학, 약학 그리고 그 밖의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 및 실험 개발 서비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사업 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 기술적 진단 서비스 • 그 밖의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그리고 • 약물 검사 서비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사업 서비스 수산업 및 양식업 수산업 및 양식업 관련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어류육상반입, 해상에서 가공되는 어류의 최초 육상반입, 그리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는 뉴질랜드 항구에의 접근(항구 특권)을 포함하여, 외국인 어업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1996년 수산업법 - 2004년 양식개혁법

분야	:	사업 서비스 에너지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이용, 유통 또는 소매를 금지, 규제, 관리 또는 통제하기 위한 요건 설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사업 서비스 광업 부수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광업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우편
의무의 유형	: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우편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및 그 밖의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에 대한 특혜적 공동제작 약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부여될 수 있는 공식 공동제작물 지위는 이러한 약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기존의 조치	: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1978년 뉴질랜드 영화위원회법」 제18절은 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뉴질랜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된 영화로 한정한다. 이 기준은 해당 상대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제작된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시청각 및 그 밖의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의 영화·텔레비전 제작의 진흥 및 공중 라디오·텔레비전·영화에서의 지역 콘텐츠 진흥에 대 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년 낙농업 구조조정법(DIRA)」에 따라 승인된 합병으로 생긴 협동낙농회사 또는 어떠한 승계기관의 지분 보유, 그리고 • 그 회사 또는 그 승계기관의 자산의 처분.
기존의 조치	:	-

분야	: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호주 외의 모든 시장에 대한 신선 키위의 수출 마케팅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1999년 키위산업 구조조정법 및 규정

분야	: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조치가 시행 중인 시장에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범주에 속하는 수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부 보증 배분제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건의 명시. 또는 • 그러한 배분제의 수립 또는 운영에 따른 도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유통 권리의 배분. <p>이 유보항목은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상품과 관련된 도매 및 유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하는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다. 이 유보항목에 명시된 서비스 분야가 관세할당, 국가별 특혜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의 일부인 한도에서 투자에 대하여 이 유보항목이 적용된다.</p>
기존의 조치	:	-

분야	:	농업 부수 서비스를 포함한 농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관련 산업 내에서의 의무 공동 판매 계획이 채택 또는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지가 있는 경우, 뉴질랜드는 다음에서 발생하는 상품의 수출 판매를 위한 의무 판매계획(“수출 판매 전략”이라고도 한다)의 수립 또는 이행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 양봉 • 원예 • 수목재배 • 경작농업, 그리고 • 가축업 <p>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의 맥락에서 의무 판매 계획은 시장 참여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수출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제외한다.</p>
기존의 조치	:	1987년 뉴질랜드 원예수출기관법

분야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도박, 베팅 및 매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2003년 도박법 및 규정 2003년 매춘개혁법 2003년 경주법 2004년 경주(피해 예방 및 최소화) 규정 2009년 경주(뉴질랜드 그레이하운드 경주 협회) 규율

분야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민족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기술적 유산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그 밖의 유산수집기관이 문서화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집품을 포함한다. • 공공 기록보관소 • 도서관 및 박물관 서비스, 또는 • 역사 또는 종교 유적지, 또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관한서비스
기존의 조치	:	-

분야	:	운송 해상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p><u>투자</u></p> <p>뉴질랜드는 다음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에 위치한 항구와 뉴질랜드에 위치한 다른 항구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의 해상 운송 및 뉴질랜드 내 동일한 항구에서 시작되고 종료되는 운송(해상 “연안운송”). • 특정 항구 서비스(도선, 예항 및 예인 보조, 연료 공급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리스트 폐기물 처리, 항만장의 서비스, 항행원조, 비상수리 설비, 정박, 통신·급수·전기 공급을 포함하여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그 밖의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의 제공. 다만, 국제 해상운송 공급자에 대하여 위의 항구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 뉴질랜드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 뉴질랜드에서의 선박 등록. 그리고, • 선원 규제 및 자연인의 주재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선원의 뉴질랜드 입국
기준의 조치	:	-

분야	:	금융 서비스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GATS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상의 뉴질랜드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정의된 금융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	-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10.3조) 최혜국 대우(제10.4조) 이행요건 금지(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0.7조)
유보내용	:	<u>투자</u> 뉴질랜드는 국보 또는 역사적이나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특정한 장소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 또는 국가적 가치를 지닌 창작 예술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⁷
기존의 조치	:	-

⁷ “창작 예술”은 연극, 무용 및 음악을 포함하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언어예술, 창의적인 온라인 콘텐츠, 토착전통관습 및 현대적 문화 표현물 및 디지털 양방향 매체, 그리고 개별 예술형식 분류의 초월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혼성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예술의 발표, 수행 및 해석에 수반된 활동과 이러한 예술 형태 및 활동의 기술적 진보와 연구를 포괄한다.